

「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2. 6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)

- 「평창군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」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감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감시요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,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과 감시요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 임.

- 주요 내용을 보면

-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분뇨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 - 주민과 감시요원에 대한 보상금 등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,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면서, 주변지역 주민 감시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분뇨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 1부